

제403회 정례회

'22. 9. 16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봉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사유

○ 「의료급여법」에서 ‘대부’를 ‘대지급’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용어 변경 (안 제5조)

- (현행) 대부 → (개정) 대지급(代支給), (현행) 대불금 → (개정) 대지급금

○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기한 변경 (안 제7조)

○ 시행규칙은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1조 전부를 삭제 (안 제11조)

○ 별지 서식 개정에 따라, 별지 서식을 변경 (별지 제1, 2호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의료급여법」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,
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존에 “대부”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2013. 6. 12. 개정된 「의료급여법」에 맞추어 “대지급(代支給)”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** 목적규정에는 “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 등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2조, 제3조**는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으로 하고 “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”으로 하는 등 대부분 자구수정을 하고 있는 바, 이는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례상 자구수정이므로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점이 없음.
- **안 제5조**는 상위법인 「의료급여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“대부”를 “대지급(代支給)”으로, “대불금”을 “대지급금”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.

<의료급여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>

의료급여법 개정 전	의료급여법 개정 후
제20조(급여비용의 대불)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(보건복지부장관이 정	제20조(급여비용의 대지급)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(보건복지부장관이 정

정한 금액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<u>대불</u>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대불금</u>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한 금액으로 한정한다)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<u>대지급(代支給)</u>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<u>대지급금</u>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-	--

- 안 제7조는 상위법인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“익년도 3월20일”을 “다음해 2월 말일”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
- ⑤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·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-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안 제5조 “대부”를 “대지급(代支給)”으로, “대불금”을 “대지급금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의료급여법」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존에 사용하였던 “대부”, “대불금”을 대지급(代支給), “대지급금”으로 변경하고,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일자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